##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11.01] (전부개정) 2024.11.01 조례 제2196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보건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797-4137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 대상)** ① 광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(이하 "예방접종"이라 한다)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지원대상자"라 한다)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의 종류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 종류 및 횟수) 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(이하 "생백신"이라 한다)
- 2.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(이하 "재조합 백신"이라 한다)
- ②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하되, 재조합 백신은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.

제4조(비용 지원) ①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: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
- 2. 제1호 외의 사람: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
- ②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.
- ③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5조(예방접종의 실시기관)** 예방접종은「지역보건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(이하 "접종기관"이라 한다) 중 광양시소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.

제6조(신청 및 지원절차)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,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환수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 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- 2.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)**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질병관리청의 「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」에 따른다.

## 부 칙 <조례 제2196호, 2024. 11. 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